

대구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19가단1218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아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

변론 종결 2020. 11. 10

판결 선고 2021. 1. 14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.8. 3. 접수 제21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2. 1. 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4810호로 C을 상대로 청구금액 8,418,883원으로 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위 법 원이 2012. 1. 10.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2012. 2. 2.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. 원고는 2019. 5. 16. 기준으로 C에 대하여 합계 15,593,907원의 양수금채권을 가지 고 있다. 나.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다음부터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2018. 8. 3. D에서 자신 앞으로 2004. 3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2018. 8. 1.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(다음부터 '이 사건 증여 계약'이라 한다)하였고,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. 8. 3. 접수 제 2112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다음부터 '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 다.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양수금채권이 있었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 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, 이러한

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 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와 그 형제들이 D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는데, 피고가 D의 채무 원리금을 오랜 기간 변제해 준 데에 대한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D의 공동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도록 협의하고, 간이한 방법으로 C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를 한 후 피고가 C에게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하였 는바, 피고는 실질적으로 C에게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지분인 1/6지분 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고,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C을 제외한 나머지 D의 공동상속인에게서 취득한 것이므로, C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

또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 자이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C 앞으로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에 해당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경대

별지